



중국 반자금세탁방지법 입법과 주요 내용

I. 개요

중국에 대규모 부패 조사가 진행되면서 작년 2,600명이 넘는 처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처벌 받았으며 자금세탁법이 시행된 이후 대규모 지하자금 거래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패'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중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검찰기관에서 작년 11월까지 조사한 부패독직사건 건수는 모두 32,300건으로 이와 관련해 38,400여명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부패독직사건은 17,400여건 이고, 이들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현의 처장(과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2,600여명에 이른다고 검찰원은 밝혔다.

이처럼 많은 고위간부가 부정부패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는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체제가 들어선 이후 부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춘왕(賈春旺)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은 검찰의 조사역량을 부정부패사건에 집중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35,000명의 조사인력을 교육·훈련했다.

지하경제의 일부를 이루는 지하자금 색출작업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안부는 작년에 상하이, 베이징, 광둥(廣東)성, 내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랴오닝(遼寧)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지에서 7건의 대규모 지하자금사건을 적발해 44명을 체포했고, 적발된 지하자금거래액은 약 140억위안(한화 약 1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2006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반자금세탁법을 통과시킨 후 지하자금 색출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안부는 이 법이 만들어진 후 중국인민은행과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세무총국, 공상총국, 은행증권보험감독위원회 등 23개 기관이 지하자금을 조사하고 있다.

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마약거래, 매춘, 불법무기 거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의해 얻어진 자금을 합법적 사업자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세탁이 이루어진 후에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실제 소비 또는 투자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조직과 많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돈세탁 정의에서의 '불법' 적인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나 과정이라는 정의와 달리, 돈세탁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나 합법이나를 묻지 않고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의 회전도 돈세탁의 일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불법' 적인 자금이나 '불법' 적인 주체에 의한 돈세탁으로 국한함으로써, 실제 돈세탁에 관여된 행위나 과정이 빠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돈세탁 실체에 조금 더 가

깝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국제적 합의에 의한 돈세탁에 대한 개념정의는 1991년 6월 10일 체결된 「유럽공동체이사 회명령」¹⁾과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²⁾에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전 중국 형법 제191조에 자금세탁죄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자금세탁죄에 관한 정의가 지나치게 협의적이고 자금세탁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주관적인 조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4년 3월,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중국인민은행,

*** -----

1) 유럽공동체이사회명령에 규정된 돈세탁의 정의

- i) 당해 재산대상물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의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재산대상물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닉 또는 가장하거나, 자신의 범죄행위의 소추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관여한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위 재산대상물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ii) 당해 재산대상물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의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산대상물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및 그 재산대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을 은닉, 가장하는 행위.
- iii) 재산대상물의 수령 시 당해 재산대상물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iv)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참가하거나 예비음모, 방조, 교사 또는 그와 같은 행위의 수행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돈세탁의 정의

- i) 범죄활동이나 범죄가담 결과로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그 불법 취득원을 은닉 또는 위장하거나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교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 ii) 범죄활동이나 범죄가담 결과로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재산의 진정한 성격, 취득원, 위치, 처분, 이동, 관련권리 및 소유를 은폐 또는 위장하는 행위.
- iii) 범죄활동이나 범죄가담 결과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iv) 이상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에 참가 또는 연루되거나, 범행원조, 방조, 조연 등을 시도하는 행위.

돈세탁 방지라 함은 각종방식을 통하여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횡령, 뇌물수수범죄, 금융관리질서파괴범죄, 금융사기범죄 등 범죄소득 및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덮어 감추거나 속이는 돈세탁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안부, 재정부 등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반(反)자금세탁법' 초안 작성팀을 만들고 초안 작성의 기본 원칙 및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주요 대상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반자금세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 고객에 대한 심사를 벌여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고액 거래와 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돈세탁 활동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돈세탁범죄 및 관련범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반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6년 10월 31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I. 주요 내용

이 법에 의한, 금융기구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 신용협작사, 우체저축기구, 신탁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및 국무원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하고 공포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기구를 말한다.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구의 범위, 그가 이행해야 하는 돈세탁 방지 의무,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금융기구와 법률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구는 법률에 따라 예방,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고객의 신분식별제도, 고객의 신분정보 및 거래내역 보관제도, 거래의거래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수립 및 건전한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돈세탁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고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기구 및 사법기관은 돈세탁 방지업무에서의 상호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직책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비밀정보로 간주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와 기타의 법률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직책을 가진 부서, 기구가 돈세탁 방지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돈세탁 방지 행정조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이 이 법에 의해 얻게 된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돈세탁 방지 형사소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제출한 거래의 거래와 수상한 거래내역보고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돈세탁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공안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고발인과 고발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 세탁방지법안의 기본구조

돈세탁 방지와 역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기준 및 입법례는 형사법과 다른 한편으로 행정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다.

(1) 형사법적 규제

돈세탁행위를 일반형법전에 편입한 입법례로는 스위스와 독일이 있다. 이는 모든 범죄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물수, 몰수재산의 보전절차, 국제사법공조 등 절차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돈세탁행위를 형법전에 편입시켜 범죄화할 경우에 압수와 몰수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과실에 대하여 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선적인 목적은 대상물의 직접 몰수이다. 그러나 대상물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에는 등가가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 형법전 개정을 통해 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형법 제261조), 단순몰수와 등가이익의 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93년 형법을 개정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과 규제개념을 정했다. 그리고 1996년 8월 1일자의 Bankenwesengesetz를 통해 일정액수 이상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스위스는 1990년에 형법개정을 통하여 돈세탁규제를 형법전에 도입하였다(형법 제305조의 2).

또 몇몇 국가에서는 대안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독일은 금전벌확대(형법 제43조의 재산형과 제73조의d 확대박탈형)를, 스위스는 범죄조직의 처분하에 있는 기금의 일반몰수규정(스위스 형법 제59조)을 두고 있다.

한편 단일법률에서 규제하는 입법례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이 있다. 중국의 반자금세탁방지법도 이 입법례에 해당한다. 단일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하며, 이는 실체법 규정은 물론 절차법까지 함께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반면 규제법률의 남발로 인하여 형법기능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법적 규제

실질적으로 돈세탁규제 내지 투쟁은 전적으로 국무원 행정주관부서와 법집행관 사이의 협조에 달려 있다. 돈세탁에 관한 행정법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혐의있는 거래행위에 대한 조직적이고 절차적인 규칙도 포함된다.

1996년 개정된 FATF 권고안은 비은행 금융기관 내지 몇몇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배경을 명확히 할 의무, 거래 자체 및 특별한 거래의 배경에 대한 조사와 신원확인절차에 관한 기록보존 의무, 혐의있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 금융기관에 의해 준수체계를 도입할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돈세탁 방지업무를 조직, 조율하고 돈세탁 방지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금

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의무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직책범위 내에서 수상한 거래 활동을 조사하며,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위임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상황을 감독·검사한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는 그가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그가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를 수립 및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거래의 거래와 수상한 거래보고를 접수·분석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수행하며 돈세탁 방지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직책을 수행할 때 국무원 관련부서·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부서, 기구는 그 정보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 기구에 정기적으로 돈세탁 방지 업무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관이 개인의 출입국시에 휴대한 현금, 무기명 유가증권이 정한 바 금액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통보금액의 기준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해관총서와 회동

하여 규정한다.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와 기타의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직책을 가진 부서, 기구가 돈세탁범죄 혐의 활동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방계기구 증설을 심사·비준시에는 신기구의 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 수립방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 법이 정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설립신청은 비준하지 못한다.

3.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의무

금융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책임자는 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내부의 기구를 지정하여 돈세탁 방지 업무를 맡겨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업무관계를 수립하거나 고객에게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환전, 어음금 지급 등 1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고객에게 유효한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 후 등기해야 하며, 타인이 고객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확인·등기해야 한다. 고객과 체결한 생명보험, 신탁 등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수익자가 고객



본인이 아닐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자의 신분 증명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에 대해 확인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분불명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그와 그 밖의 거래를 하지 못하며, 고객에게 차명계좌 또는 가명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금융기관이 그가 취득한 고객의 신분자료의 진실성, 유효성 또는 완벽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분을 다시 확인·식별해야 한다. 누구든지 금융기관과 업무관계를 수립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1차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제3자를 통해 고객의 신분을 식별할 경우 제3자는 법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3자가 법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식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진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을 식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로부터 고객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 정보 및 거래내역 보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업무관계 존속기간에 고객의 신분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고객의 신분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고객의 신분정보는 업무관계가 종료된 후, 고객의 거래내역은 거래가 끝난 후 최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시에는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을 국무원 관련부서가 지정한 기구에 넘겨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거액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1회의 거래 또는 규정된 기간 내의 누적거래가 정한 바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돈세탁 방지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식별제도, 고객의 신분정보 및 거래내역보관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금융기관의 거액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보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제도의 요구에 따라 돈세탁 방지 교육과 선전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4. 돈세탁 방지 조사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성급 파출기구가 수상한 거래활동을 발견하고 조사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그에 협조하고 관련문서와 자료를 필히 제공해야 한다.

수상한 거래활동을 조사할 때에는 최저 2명의 조사요원이 참여해야 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증서 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급 파출기구가 제시한 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요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서 또는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상한 거래활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질문을 기록해야 하며 질문기록은 질문대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질문대상자는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 대상자가 기록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조사요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조사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급 파출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조사대상의 계좌정보, 거래내역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전이·은닉·개찬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자료는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조사요원이 문서·자료를 봉인 보관할 경우에는 현장의 금융기관 업무직원과 회동하여 문서·자료를 점검하고 즉석에서 1식 2통의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요원과 현장의 금융기관 업무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통은 금융기구에 남기고 1통은 안전서류에 철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돈세탁 혐의를 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고객이 조사와 관계되는 계좌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임시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안전 신고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임시 동결자금에 대한 동결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조치를 취하며, 동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돈

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즉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금융기관이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조치를 취한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의 동결유지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5. 돈세탁 방지 국제협약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인 또는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돈세탁 방지 국제협약을 전개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의 위임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관련 국제조직과 돈세탁 방지 협약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정의 돈세탁 방지 기구와 돈세탁 방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며, 돈세탁 범죄 추궁과 관련되는 사법협조는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하루 입출금액 20만위안(1위안은 한화 약 129원) 이상일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돈세탁 방지법 세부 규정을 발표했고,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규정’ 과 ‘금융기관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 관리방법’ 을 각각 공포했다.

두 규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돈세탁 방지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보고 관리방법은 금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에는 먼저 한 차례 또는 하루 누적액이



20만 인민폐 또는 외화 1만달러(미화 환산) 이상인 현금 입출금이 이에 해당한다. 또 ▲ 법인이나 단체, 개인업체 간 하루 누적액 200만 인민폐 또는 외화 20만달러 이상의 계좌 이체, ▲ 자연인 간 또는 자연인과 법인 등 간 하루 누적액 50만 인민폐 또는 10만달러 이상의 계좌 이체 ▲ 자연인의 하루 누계 1만달러 이상의 해외거래도 보고 대상이다.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시중은행은 물론 도시 및 농촌의 신용조합, 우체국, 증권회사, 선물거래회사, 기금관리공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보험사, 보험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중국 사법사상 처음 제정된 돈세탁 방지법은 금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금세탁을 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5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III. 평가 및 국제동향

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돈세탁은 자금세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불법적 무기 판매 및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및 컴퓨터 사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운용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돈세탁 규모는 연간 2천억 인민폐, GDP의 2%에 달해 중국의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의 지하경제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경제는 밀수, 마약, 사기, 탈세 등 각종 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주요 감시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지하경제의 자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방대하여 현금 보다는 투자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합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수입의 해외유출 및 중국 내 자금주적 및 법률제도를 피하기 위한 불법수입의 해외이전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인의 해외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돈세탁 업무의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반자금세탁 업무의 조직력을 강화해 반 자금세탁 업무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담당자 문책제 및 업무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한다.
- ② 반자금세탁 위안화외화 관리의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반자금세탁 정보시스템을 통합정비한다.
- ③ 법에 따른 행정 처벌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반 자금세탁 관리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준법의식을 확립한다.
- ④ 증권 및 보험업의 반자금세탁 관리감독에 대한 충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 ⑤ 혐의 거래안의 단서를 절대 놓치지 말며 반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적극 입수하여 중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반자금세탁 관리감독의 수단 및 방법을 연구하고 혁신한다.

⑦ 자질을 갖춘 반자금세탁 관리감독 인력 양성에 힘쓴다.

돈세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 은행에서 10억 원을 인출하면서 1억 원짜리 10장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이를 다시 10개의 은행에 분산해 예치하고, 다시 1000만 원짜리로 분산하는 등 계속 작은 단위로 나누는 뒤 마지막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은행 계좌는 거의 가명이며, 최종 단계에서도 역시 현금이 가명으로 인출되고 나면 계좌 추적이 어렵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단자회사나 투자신탁 등이 수백 장의 수표를 쌓아두고 있다가 인출 요구가 있을 때 기록 없이 내주는 관행을 이용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거나 투자신탁 등에 가명으로 수표를 입금한 뒤 다음 날 다른 수표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 돈세탁은 중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고객의 비밀을 생명처럼 여기는 스위스의 여러 은행에 세계 각국의 검은돈이 몰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스위스 최대 은행인 연방은행(UBS)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제은행들이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돈세탁 방지에 힘쓰고 있다.

최근의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돈세탁자들이 전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돈세탁을 함에 있어서 금융관련 전문가들(회계사나 변호사)들이 그들의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돈세탁을 하여주고 자신들은 수수료

를 챙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돈세탁 자금을 가지고 전위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체를 경영하여 이에 대한 이익금을 돈세탁 자금을 댄 전주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둘째, 기존의 돈세탁은 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보험회사, 환전소, 증권회사와 같은 비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이 늘고 있고, 카지노, 여행사, 보석상과 같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업종을 통해 돈세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석상의 경우는 보석을 구입할 때에 외국과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 금액도 고액이라는 점에서 돈세탁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셋째, 돈세탁은 기존의 수법 외에도 새로운 수법들을 개발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전신송금, 현금분할거래, 가차명 계좌 이용 등 단순한 거래들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를 통한 돈세탁 수법은 거래액을 실제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계약하고 그 차액을 돈세탁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인 스마트카드(smart card)나 전자화폐(e-cash)를 통한 돈세탁 수법이 늘 것으로 FATF는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金)을 이용한 돈세탁 수법을 쓰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금 그 자체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자금으로 금을 구입한 후에 재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자금으로 돈세탁을 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돈세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조직범죄, 특히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각국이 범죄조직에 의한 돈세탁은 물론 '모든' 범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세탁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조치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세탁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만들어 이에 대한 보상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돈세탁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법의 새로운 지급수단이나 돈세탁 수법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자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수입분석(net worth analysis) 방법을 도입하거나 자기앞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미국식으로 일련번호를 넣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 화 섭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